의안번호	제 호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추계 실시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마련하고,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두는 재정·통계 전문위원회를 재정 전문위원회와 통계·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하며, 사회보장제도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. 30. ~ 3. 11., 4. 7. ~ 4. 27.) 결과,

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전단 중 “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재정추계”를 “재정추계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재정추계세부지침”을 “재정추계 세부지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“국무2차장”을 “차장”으로 하며, 같은 호 후단 중 “복수차관”을 “복수차관 또는 차장”으로, “차관으로”를 “차관 또는 차장으로”로 한다.

3.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

제12조제1항제4호 중 “재정·통계”를 “재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통계·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

제19조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

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및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4의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(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37조 및 이 영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(건강관리,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

2.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

포함된 자료

② 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별표 1을 별표로 하고, 같은 표(종전의 별표 1) 제1호가목1) 중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를 “산재보험 노무제공자”로 하며, 같은 목 4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 6) 중 “징수”를 “징수,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,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등,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,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”로 한다.

4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·제6조·제8조·제9조·제10조에 따른 가입자·피부양자의 자격,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일부부담,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,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,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,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,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 및 같은 법 제71조 따른 소득월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별표(종전의 별표 1) 제1호나목5)를 6)으로 하고, 같은 목에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)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, 같은 법 제10조에 따

른 급여비용의 부담(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,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,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금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별표(종전의 별표 1) 제1호다목1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 9)부터 19)까지를 각각 11)부터 21)까지로 하며, 같은 목 2)부터 8)까지를 각각 3)부터 9)까지로 하고, 같은 목에 2) 및 10)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,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,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,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2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10)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11조에 따른 구인·구직 정보의 수집 등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,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별표(종전의 별표 1)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42조제1항제2호: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·직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

가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

나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

다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정·통계 전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·통계 전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 전문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·통계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사회보장 재정추계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(財政推計)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정추계세부지침에는 재정의 세부범위, 추계방법, 추진체계, 공표방법·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	제2조(사회보장 재정추계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 재정추계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 재정추계 세부지침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- ----------.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실무위원회 설치 등) ① (생 략)	제11조(실무위원회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②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,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④ ----------.
1. 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, 법무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국가보훈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농림축산식품부차관, 산업통상자원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환경부차관, 고용노동부차관, 여성가족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. 이 경우 복수차	1. ---------- -- 차장. -------- 복수 차

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.	관 또는 차장---------- ---------- 차관 또는 차장으로 ---------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전문위원회 설치 등)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2조(전문위원회 설치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재정·통계 전문위원회	4. 재정 ----------
<신 설>	4의2. 통계·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 ① ~ ③ (생 략)	제19조(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보건복지부장관(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)은 법 제37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	<삭 제>

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(건강관리,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3에 따른 기구로 한다.	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.
제20조(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) ①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	제20조(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) ① 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
4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	4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

른 부동산정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	른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및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<신 설>	4의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(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	1. 법 제37조 및 이 영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(건강관리,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

	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.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 ② 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711